

직업능력정책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

지침

[시행 2023. 9. 22.] [고용노동부예규 제218호, 2023. 9. 22., 제정]



고용노동부(직업능력정책과), 044-202-7282

제1조(목적) 이 예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1.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 제63조,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별표 5 제1호가목·나목
2. 「숙련기술장려법」 제2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별표 제1호가목·나목
3. 「국가기술자격법」 제26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별표 7 제1호가목·나목

제2조(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) ①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1과 같다.

1.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 제63조,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별표 5 제1호가목·나목
2. 「숙련기술장려법」 제2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별표 제1호가목·나목

② 「국가기술자격법」 제26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별표 7 제1호가목·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2와 같다.

제3조(재검토 기한)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칙 <제218호,2023.9.22.>

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